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22
----------	-----

2025. 4. 30.(수)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이정범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25년 4월 11일

다. 회부일자: 2025년 4월 14일

라. 상정일자: 2025년 4월 22일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정범 의원)

가. 제안이유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2023.9.27.) · 시행(2024.3.28.)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법령이 혼재된 조문 등을 정비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인용법령 조문 변경 및 명확한 용어 정의(안 제2조제6호)
- 교육활동 침해 관련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 관련 혼재된 인용법령 및 조문 정비(안 제9조제1항제3호)
- 상위법에 근거하여 교육활동보호센터 업무 명확히 규정(안 제14조제1항)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비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 교육활동 침해 → 교육활동 침해행위
 - 교원법률지원단 →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안 제14조제2항제4호)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원호)

가. 조례 제안이유 검토

- 2023년 9월 27일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4.3.28. 시행)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하였음
- 한편, 본 조례 제9조제1항제3호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2조제4호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와 학교규칙에 따라 학교장과 교원이 조례 제8조제2항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는 학생에 대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교권 침해 행위 학생과 교원 간 분리 및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한 교육 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실효성 있게 취할 수 있는 생활지도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에 대한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분리조치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 따른 유아에 대한 조언, 상담, 주의, 훈육은 생활지도로써 교원지위법 제20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관련 학생과 피해교원의 분리와는 성격 및 근거법, 절차 등이 다른 별도의 제도이나 혼용되어 있음
- 이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혼재된 인용법령 및 조문 정비 등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업무 추진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제6호는 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변경을 반영하고, 안 제9조제1항제3호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정의를 명확히 한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9조제1항제3호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학생과 피해 교원 간 분리 및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 등에 관하여 규정함
 - 현행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에 대한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분리조치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 따른 유아에 대한 조언, 상담, 주의, 훈육은 생활지도로써 교원 지위법 제20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관련 학생과 피해교원의 분리와는 성격 및 근거법, 절차 등이 다른 별도의 제도이나 혼용되어 있음
 - 단,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학생 또는 보

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지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11조는 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지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안 제2조제6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정의함에 있어 법 제19조에 해당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학생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안 제9조제1항제3호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학생과 피해 교원 간 분리 및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한 것은 조례 해석 및 업무 처리과정에서의 혼란을 없앨 수 있는 타당한 조치라 사료됨

○ 안 제14조는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관련법령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한 바, 본 조례에서도 교원치유지원 센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법령이 혼재된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춰 조례를 현행화하고 조례의 해석 및 업무 처리과정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은 조례의 실효성 및 업무추진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법제처의 「법령 입안 및 심사 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내용상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고, 담당부서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2조제4호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2조제4호,”로, “장과”를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19조”로, “행위를”을 “행위와 학생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을 “학교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를 “교육활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침해”를 “침해행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침해 예방과”를 각각 “침해행위 예방과 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침해”를 “침해행위”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침해 예방과”를 “침해행위 예방과 교원”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침해”를 “침해행위”로, “아니되며”를 “안 되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침해 행위”를 “침해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침해 예방과”를 “침해행위 예방과 교원”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하여서는 아니**”를 “**해서는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아니된다**”를 각각 “**안 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침해행위에 대한**”을 “**침해행위 발생 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침해 피해 관련 분쟁으로부터**”를 “**침해행위로부터 피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침해 피해 교원 요청 또는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피해 교원의 요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침해 사안**”을 “**침해행위 사안**”으로, “**교육활동 침해 긴급지원단**”를 “**교육활동 침해 긴급지원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충청북도교육청**”을 “**충청북도교육청**”으로, “**매뉴얼**”를 “**매뉴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제2호의 교원 보호조치 및 교원에 대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를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원 보호조치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9조제1항제5호의 ‘교육활동 침해 긴급지원단’**”를 “**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긴급지원단**”으로 한다.

3.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학생과 피해 교원 간 분리 및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제13조제5항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지원 등 심리적 회복에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는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침해**”를 “**침해행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예방 및**”을 “**침해행위 예방 및 피해교원**”으로 한다.

4.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운영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7조 중 “**법 제16조의2제1항**”을 “**법 제16조**”로, “**침해 행위**”를 “**침해행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학생생활지도”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2조제4호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2조제4호 및 학교규칙에 따라 학교의 <u>장</u> 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일체의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5.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2조제4호, ----- ----- ----- ----- ----- -----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 ----- ----- ----- -----.
6.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 법 제19조----- 행위와 학생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
제3조(기본원칙)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기본원칙) ----- ----- -----.

1. ~ 3. (생 략)

4.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의 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피해 교원 보호와 교육활동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학교 교육환경 조성
2.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 구성·운영
3.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보호에 관한 학교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교원·학생·보호자 대상 교육·홍보
4.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법적 대응, 심리상담, 치료 등

1. ~ 3. (현행과 같음)

4. -----

---- 학교장 -----

-----.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
----- 교육활동 -----

-----.

1. ----- 침해 행위 -----

2. ----- 침해 행위 예방과 교
원 -----
--
3. ----- 침해 행위 예방과 교
원 -----

4. ----- 침해 행위 -----

에 대한 지원과 보호조치

5. (생략)

6.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 예방
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
항

② (생략)

제5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관련 사
실을 축소·은폐해서는 아니되
며, 교권보호책임관 및 업무담
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상자와
피해 교원의 즉시 분리·조치
등 2차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방
지 및 재발 방지 대책 시행

5. ~ 7. (생략)

8.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 예방
과 보호를 위한 조치

제6조(교원의 책무) 교원은 학생
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7조(보호자의 의무) ① 보호자
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
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5. (현행과 같음)

6. ----- 침해 행위
예방과 교원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학교장의 책무) -----
----- 침해 행위 -----
----- 안 되며-----

-----.

1. ~ 3. (현행과 같음)

4. -----

----- 침해 행위 -----

5. ~ 7. (현행과 같음)

8. ----- 침해 행위
예방과 교원 -----

제6조(교원의 책무) -----
----- 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보호자의 의무) ① -----

----- 해서는 안

아니 된다.

② · ③ (생 략)

④ 보호자는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교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비난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보호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학생의 의무) ① (생 략)

②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1. ~ 4. (생 략)

제9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에 있어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 지도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학교장과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2. 교육활동 침해 피해 관련 분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안 된다.

⑤ -----

----- 안 된다.

제8조(학생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안 된다.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

1. -----

----- 침해행위
발생 시 -----

2. ----- 침해행위로부터 피

쟁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민·형사상 소송비용, 상
해·상담·심리 치료비 등의
비용지원

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
한 고시」 제2조제4호 및 「유
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와 학교규칙에 따
라 학교장과 교원이 제8조제2
항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
는 학생에 대해 조언, 상담, 주
의, 훈육, 훈계, 교권 침해 행
위 학생과 교원 간 분리 및 분
리조치된 학생에 대한 교육방
안 마련 등의 조치를 실효성
있게 취할 수 있는 생활지도
보장 방안 마련

4.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요
청 또는 교육활동 침해 신고
시 교권보호위원회 즉시 개최

5.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육·법률 전문가 등이 포함
된 ‘교육활동 침해 긴급지원
단’ 구성·운영

6. (생략)

7.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
호 관련 매뉴얼’ 제작·보급

해 -----

3.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학
생과 피해 교원 간 분리 및 분
리조치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
련

4. ----- 침해행위에 대한 신
고 또는 피해 교원의 요청 --

5. ----- 침해행위 사안 ----

-- 교육활동 침해 긴급지원단

6. (현행과 같음)

7. 충청북도교육청 -----
----- 매뉴얼 -----

8. (생 략)

② 교육감은 제1항 제2호의 교
원 보호조치 및 교원에 대한 각
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이하 “교원
보호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
영·관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
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제2항
의 교원보호공제사업 운영을 위
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제9조제1항제5호의 ‘교육활
동 침해 긴급지원단’ 구성·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3조(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
처리) ① ~ ④ (생 략)

⑤ 학교장은 반복·중복되는 민
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8.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원 보호조치를 -----

-----.

③ ----- 「학교안전사고 예
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
조-----

-----.

④ 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긴급지원단 -----

-----.

제13조(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
처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⑥ (생 략)

제14조(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7조에 따른 교원치유지원 센터의 기능과 함께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지원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교육활동 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맞춤형 심리상담·치료, 법률 상담 등의 지원

2.·3. (생 략)

4. 교권법률지원단 운영

5. 그 밖에 교권 및 교육활동 예방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생 략)

제16조(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 교육감은 본 조례를 준용하여 학교 등에서 교원과 함께 학생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지원 등 심리적 회복에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는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
-----.

1. ----- 침해행위 -----

2.·3. (현행과 같음)

4.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운영

5. ----- 침해행위 예방 및 피해교원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 -----

-----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자의 교육
활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1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법 제
1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 관련 실태조사 결과
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
한 시책 수립에 반영하고 필요
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제17조(실태조사) ----- 법 제1
6조-----
침해 행위 -----

-----.

관 계 법 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4. 3. 28.] [법률 제19735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16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 보호조치,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9. 27.>

[본조신설 2019. 4. 16.]

[제1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3. 9. 27.>]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
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3. 9. 27.]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
다. <개정 2023. 9. 27.>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본조신설 2016. 2. 3.]

[제목개정 2023. 9. 27.]

[제17조에서 이동 <2023. 9. 27.>]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3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

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3. 미첨부 사유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인용 법령 조문 변경, 자구 정비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교육활동보호센터장 최선미